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12. 16.>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복량의 한계(제37조제1항 관련)

1. 근해어업

어업의 종류	선복량의 한계(총톤수)
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60톤 이상 140톤 미만
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60톤 이상 140톤 미만
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20톤 이상 60톤 미만
라.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20톤 이상 60톤 미만
마.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20톤 이상 60톤 미만
바. 대형트롤어업	60톤 이상 140톤 미만
사. 동해구중형트롤어업	20톤 이상 60톤 미만
아. 대형선망어업	50톤 이상
자. 소형선망어업	10톤 이상 30톤 미만
차. 근해채낚기어업	10톤 이상
카. 근해자망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타. 근해안강망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파. 근해봉수망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하. 근해자리돔들망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거. 근해장어통발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너. 근해문어단지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더. 근해통발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러. 근해연승어업	10톤 이상
머. 근해형망어업	20톤 미만
버. 기선권현망어업	40톤 미만
서. 잠수기어업	10톤 미만

2. 연안어업

어업의 종류	선복량의 한계(총톤수)
--------	--------------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0톤 미만
나. 연안선망어업	10톤 미만
다. 연안통발어업	10톤 미만
라. 연안조망어업	10톤 미만
마. 연안선인망어업	10톤 미만
바. 연안자망어업	10톤 미만
사. 연안들망어업	10톤 미만
아. 연안복합어업	10톤 미만

3. 구획어업

어업의 종류	선복량의 한계(총톤수)
가. 새우조망어업	5톤 미만
나. 실뱀장어안강망어업	5톤 미만
다. 패류형망어업	5톤(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에는 8톤) 미만